

#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1
----------	-----

제출년월일 : 2013. 08. / 3.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 및 시행령(2013. 4. 22.), 시행규칙(2013. 4. 24.) 개정
  - 개정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 반영 개정
-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 주요내용

-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안 제8조, 제9조).
  - (구성) 부시장인 회장 1명,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명,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소속 지자체의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등 총 9명 이내 ⇒ 이해당사자로 구성
- 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
-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 개설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4조).
- 라.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단서).
- 마.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장이 공고토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 바.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8조).
  - 영업시간 제한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

- 의무휴업일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하도록 함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조례

- 방침 결정문

#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9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5조 중 “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으로 하고, “구성하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15명”을 “9명”으로 하며,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8호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 관할구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나. 시 관할구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다. 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라. 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을” 을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1인을 둘 수 있으며”를 “1명을 두되,”로 하고, “유통업무담당”을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한다.

제8조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연 2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를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9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을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중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을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으로 하고,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를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 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을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로 한다.

제9조제2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8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9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형유통업 ·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을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및” 을 “또는” 으로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 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1호 및 2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에” 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로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로 하고, “명하고,” 를 “명하거나” 로 하며, “휴업 을 명하여야 한다” 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로 하고, “51퍼센트” 를 “55퍼센트” 로 하며,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를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제18조제1항1호 중 “8시까지 한다” 를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한다.

제18조제1항2호 중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를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제1항제2호 후단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 전일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		지역경제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최 경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계장 원 익희
	담당자 성명·전화	전병두 (행정 2696)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8. (생략)</p> <p>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u>제6호</u>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8. (현행과 같음)</p> <p>9. ----- --<u>제7호</u>--</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시</u>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u>안산시(이하 “시”라 한다)</u>-----</p>
<p>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p> <p>① 시장은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까지로 한다.</u></p> <p>② 협의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u></p> <p>1.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p> <p>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p> <p>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p> <p>4.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p> <p>5. 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p> <p>6. 안산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과장</p> <p>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8.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p> <p>① ---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u>----- -----<u>구성한다.</u></p> <p>② ----- <u>회장</u> ----- -----<u>9명</u>-----<u>구성한다.</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p> <p>가. 부시장</p> <p>나.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p> <p>2. 위촉직 위원</p> <p>가. 시 관할구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p> <p>나. 시 관할구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p> <p>다. 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p> <p>라. 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민 등 이해관계자</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p>	<p>〈삭제〉</p> <p>⑧ ----- 사무를 처리하기 --- 1명을 두되, -----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p>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신설〉</p>	

현 행	개 정 안
	<p>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p> <p>⑦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p> <p>〈신 설〉</p>	<p>④ -----하며----- ----- ----- -----.</p> <p>⑨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⑦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 이상의----- -----.</p>
<p>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⑩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p> <p>⑪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p>
<p>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p>	<p>제9조(협의회의 업무) -----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p>

현 행	개 정 안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삭 제〉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5. 대형유통업·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전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삭 제〉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7호와 같음)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4.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형유통업·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60일전에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p> <p>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p> <p>② ~ ⑤ (생략)</p>	<p>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 ----- ----- 또는 ----- (----- -----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 ----- -----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 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p> <p>〈삭 제〉</p> <p>〈삭 제〉</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p>	<p>제18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p>

현 행	개 정 안
<p>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u>51퍼센트</u> 이상인 <u>대규모점포등</u>은 제외한다.</p>	<p>-----<u>명하거나</u>-----  -----<u>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u>-----  -----  -----  -----<u>55퍼센트</u>-----<u>대규모점포등</u>  <u>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u>8시까지로 한다.</u></p>	<p>1. -----  -----  -----<u>10시까지의 범위에서</u>  <u>할 수 있다.</u></p>
<p>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u>2일로</u>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p>	<p>2. -----  -----<u>이틀로</u>  <u>지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u>공휴일</u>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 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제1항제2호 후단의 “<u>이해당사자와의 합의</u>”로 간주한다.</p>
<p>〈신 설〉</p>	<p>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p>